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61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이학영 · 서미화 · 정태호
한정애 · 이재정 · 김영호
한민수 · 김영배 · 강준현
위성곤 · 최혁진 · 박민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

그런데 최근 법정의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가 빈발하여 현행법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의 출입금지를 제재처분에 추가하며, 출입금지를 어긴 경우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두고, 처

분대상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직무고발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공고히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수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併科)할”을 “제1호 또는 제3호의 처분은 제2호의 처분과 병과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1.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해당 법원에서의 출입금지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일 이내의 감치(監置)

⑤ 법원은 제1항제1호의 처분에 위반하여 출입금지 기간 중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 출입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61조(감치 등)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제1호 또는 제3호의 처분은 제2호의 처분과 병과할-----.
<신 설>	1.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해당 법원에의 출입금지
<신 설>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 설>	3. 20일 이내의 감치(監置)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 ----- ----- ----- -----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신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제1항제1호의 처분
에 위반하여 출입금지 기간 중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 출입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
다.

⑥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소
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

⑧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